

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말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 신설(제3조제1항 관련)

○ 농축산과 소관

-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⇒ 건당 30,000원

-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 수수료 ⇒ 건당 1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[별첨 2]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4.1.24~2014.2.14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1141호, 2014.2.4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970, 2014.1.27)
- 4) 성별영향 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6802, 2014.1.28)
- 5)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: 원안가결(경제체육과-6782, 2014.2.19)
- 6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[별첨 1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각종 증명 등 수수료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고
1. 종합민원과 소관			
○ 개별공시지가 확인서	1필지(년도별)	800원	
○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(중개사)	1건	20,000원	
○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(법인)	1건	30,000원	
○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	1건	10,000원	
○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	1건	800원	
○ 토지이용계획확인서	1필지	1,000원 칼라 1,500원	
○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	1건	7,000원	
2. 재무과 소관			
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	1건	800원	
○ 개별주택가격 확인서	1건	800원	
○ 공동주택가격 확인서	1건	800원	
○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(신규)	1건	5,000원	
○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(계속)	1건	3,000원	
3. 문화관광과 소관			
○ 공연장 등록	1건	10,000원	
○ 공연장 변경등록	1건	5,000원	
○ 유통관련업 등록(영화,음반,비디오,게임)	1건	20,000원	
○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(영화,음반,비디오,게임)	1건	5,000원	
○ 유통관련업 신고(영화,음반,비디오,게임)	1건	20,000원	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고
○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(영화,음반,비디오,게임)	1건	5,000원	
○ 영화상영관 등록신청	1건	20,000원	
○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	1건	10,000원	
○ 유원시설업 허가신청(종합)	1건	60,000원	
○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(종합)	1건	30,000원	
○ 유원시설업 허가신청(일반)	1건	50,000원	
○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(일반)	1건	15,000원	
○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(종합,일반제외)	1건	30,000원	
○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(종합,일반제외)	1건	15,000원	
○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	1건	10,000원	
○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	1건	20,000원	
○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	1건	5,000원	
4. 경제체육과 소관			
○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 등) 신고	1건	30,000원	
○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	1건	20,000원	
○ 공장등록 증명	1건	1,000원	
○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	1건	2,000원	
○ 체육시설업 신고, 등록	1건	30,000원	
○ 체육시설업 변경신고, 등록	1건	10,000원	
5. 환경과 소관	1건	6,000원	
○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(허가) 신청	1건	10,000원	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고
○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(신고) 신청	1건	5,000원	
○ 소음·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	1건,	5,000원	
6. 건설방재과 소관			
○ 건설기계저당등록(말소) 신청	1건	1,000원	
7. 도시주택과 소관			
○ 차고지 설치확인	1건	6,000원	
8. 보건사업과 소관			
○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(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)	1건	40,000원	
○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(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)	1건	20,000원	
○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(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)	1건	100,000원	
○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(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)	1건	40,000원	
○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	1건	10,000원	
○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(양도양수) 수수료	1건	10,000원	
9. 농축산과 소관			
○ 수산물가공업 등록	1건	1,000원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9,000원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7,500원	
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	1건	5,000원	
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	1건	1,000원	
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	1건	5,000원	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고
○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	1건	30,000원	신설
○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(변경)	1건	10,000원	신설
10. 기술지원과 소관			
○ 비료생산업 등록	1건	30,000원	
○ 비료수입업 등록	1건	20,00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각종 증명 등 수수료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8. (생 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9. 농축산과 소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수산물가공업 등록</td> <td>1건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9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7,5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5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5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신 설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신 설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9. (생 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1. ~ 8. (생 략)				9. 농축산과 소관				○ 수산물가공업 등록	1건	1,000원		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9,000원		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7,500원		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	1건	5,000원		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	1건	1,000원		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	1건	5,000원		<신 설>				<신 설>				9. (생 략)				<p>[별표 1] 각종 증명 등 수수료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8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9. 농축산과 소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수산물가공업 등록</td> <td>1건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9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7,5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5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</td> <td>1건</td> <td>5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</u></td> <td><u>1건</u></td> <td><u>30,000원</u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(변경)</u></td> <td><u>1건</u></td> <td><u>10,000원</u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9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1. ~ 8. (현행과 같음)				9. 농축산과 소관				○ 수산물가공업 등록	1건	1,000원		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9,000원		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7,500원		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	1건	5,000원		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	1건	1,000원		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	1건	5,000원		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</u>	<u>1건</u>	<u>30,000원</u>		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(변경)</u>	<u>1건</u>	<u>10,000원</u>		9. (현행과 같음)			
구 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8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농축산과 소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수산물가공업 등록	1건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9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7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	1건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	1건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	1건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8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농축산과 소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수산물가공업 등록	1건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,정치망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9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(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)	1건	7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(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)	1건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)	1건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(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)	1건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</u>	<u>1건</u>	<u>30,00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<u>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(변경)</u>	<u>1건</u>	<u>10,00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첨 1]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최원규
연락처	(033) 330-2270

[별첨 2]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◆ 지방자치법 제137조(수수료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◆ 지방자치법 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말산업 육성법

◆ 제15조(승마시설의 신고 등)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

□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

◆ 제6조(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(이하 "승마시설"이라 한다)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(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.

□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

◆ 제7조(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)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(이하 "승마시설"이라 한다) 신고서(변경신고서)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.